

200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

이 자료는 2006. 6월 현재 관계법령의 제·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산 림 정

“건강한 숲, 풍요로운 산, 행복한 국민”

목 차	
1. 영림계획 제도 개선	2
2. 도시림 조성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	3
3. 가로수 조성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	3
4. 산림사업 대행·위탁제도 개선	4
5. 산림사업의 설계·감리 제도 시행	4
6. 산림기술자 제도 개선	5
7. 임업기술지도원 제도 개선	5
8.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강화	5
9. 보안림 관리 제도 개선	6
10. 녹색자금의 운용·관리 개선	7
11.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운영	7
12. 국유림 보호협약 대상 확대	7
13. 국유림 연접 사유림 등의 경영을 국가가 대행	8
14. 「국민의 숲」 지정 운영	8
15. 공동산림사업제 도입	8
16. 국유림 이용 확대	9
17. 국유림 대부 제도 개선	9
18. 산림문화·휴양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	9
19. 자연휴양시설 타당성 평가 실시	10
20.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휴식년제 도입	10
21. 조난구조 등을 위한 산림항공구조대 편성 운영	10
22. 자연휴양림 지정요건 완화	10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규정 및 시행일	변경사유 및 기대효과	소관부서
1	영림계획 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림계획 ○ 공·사유림의 영림계획 수립은 권장 제로 운영 ○ 영림계획은 영림기술자가 작성, 단 임업 후계자·독립가는 자기 산림에 한해 작성 가능 ○ 영림계획에 의하여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 산림사업 착수 7일 전까지 시장·군수에게 신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경영계획으로 명칭 변경 ○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수립은 의무제로 전환 ○ 산림소유자도 자기 산림에 대해 직접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완화 ○ 산림경영계획에 의하여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 산림사업 착수 5일전까지 시장·군수에게 신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(2006.8.5) " " 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(2006.8.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이 알기 쉽게 명칭 변경 ○ 공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사유림경영에 대한 선도역할 강화 ○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활성화 유도 ○ 신고기한 단축으로 산림소유자의 부담 완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림정책과 ☎ (042) 481-4131 " " "

번호	제 목	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규정 및 시행 일	변경사유 및 기대 효과	소관부서
2	도시림 조성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	○ 산림기본법 제18조에 선언적 근거	○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의 도시림 을 조성·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도시림 조성·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	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(2006.8.5)	○ 도시림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및 도시 생활공간 개선	산림휴양 정책과  (042) 481-4217
3	가로수 조성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	○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(산림청 예규)에 의하여 사업 실행	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마련 - 가로수 관리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지자체 외의 자가 가로수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 -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도로의 설계부터 가로수 식재 공간 반영 - 지자체장은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	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(2006.8.5)	○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 증진 및 조성 확대 기반 마련	산림휴양 정책과  (042) 481-4217

번호	제 목	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규정 및 시행 일	변경사유 및 기대 효과	소관부서
4	산림사업 대행·위탁 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사업은 대행·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산림조합,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사업법인으로 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조합,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 사업을 대행·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, 현행 강행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, ○ 산림사업법인은 대행·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되, 경쟁에 의한 사업 수주가 가능도록 개선 <p><신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조사, 영업정지,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(2006.8.5) 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(2006.8.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사업의 전전한 경쟁관계 유도 ○ 부실법인의 난립을 방지 	경영지원과 ☎ (042) 481-4195
5	산림사업의 설계·감리 제도 시행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정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은 설계·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0ha 이상의 숙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- 3ha 이상의 조림사업 - 임도사업 또는 사방사업 (단, 감리는 건당 2억원 이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(2006.8.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사업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 	숲가꾸기팀 ☎ (042) 481-4186

번호	제 목	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규정 및 시행 일	변경사유 및 기대 효과	소관부서
6	산림기술자 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림기술자, 산림토목기술자, 목구조기술자로 구분하여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기술자로 명칭을 통일하고 직무분야를 산림경영, 산림공학, 목구조로 구분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(2006.8.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 개편 	경영지원과  (042) 481-4191
	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규정 마련 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성실·부실 자격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 	"
7	임업기술지도 원 제도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업기술지도원이 산림관련 기술의 지도·보급 업무수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경영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주에 대한 경영지도, 산림관련 기술의 개발·보급·조사 업무 등을 수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(2006.8.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경영 지도업무 강화 및 지도원의 사기진작 도모 	경영지원과  (042) 481-4191
8	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강화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5년마다 산림생물 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(2006.8.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 	산림환경 보호과  (042) 481-4241

번호	제 목	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규정 및 시행 일	변경사유 및 기대 효과	소관부서
9	보안림 관리 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토사방비, 생활환경, 비사방비, 수원함양, 어부, 보건, 풍치, 낙석방비 등 8종 ◦ 무육을 위한 벌채, 수원함양림을 위한 벌채, 복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만을 허용 ◦ 제 3종 수원함양 보안림 해제시 협의 절차 없이 산림청장이 해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토석방비, 생활환경, 비사방비, 수원함양, 어부, 경관 등 6종 ◦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에서도 산림경영과 관련된 임도·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, 표고 재배용 입목벌채(50m³이내), 산채·산약초 재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◦ 10ha 이상의 제3종 수원함양 보안림 지정 해제시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림청장이 해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(2006.8.5) 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(2006.8.5) 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(2006.8.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정 목적이 유사한 보안림의 종류 통합 ◦ 보안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국민편의 제공 ◦ 제 3종 수원함양 보안림 관리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산림환경 보호과 ☎ (042) 481-4241 ◦ ” ◦ ”

번호	제 목	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규정 및 시행 일	변경사유 및 기대 효과	소관부서
10	녹색자금의 운용·관리 개선	○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운용·관리 <신설>	○ 산림청장이 운용·관리 ○ 녹색자금관리단을 설립하여 녹색자금 운용·관리 업무 수행	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(2006.8.5) 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(2006.8.5)	○ 녹색자금 운용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"	산림정책과 ☎ (042) 481-4135
11	국유림경영 관리자문위원회 운영	<신설>	○ 국유림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,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 경영관리자문위원회 운영	○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(2006.8.5)	○ 국유림 경영에 대한 전문가,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	국유림경영과 ☎ (042) 481-4095
12	국유림 보호 협약 대상 확대	○ 산림조합, 학교 또는 임업기능인이 일정한 구역에 대한 산림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유림 보호 협약 체결	○ 산림조합, 학교 또는 임업기능인 외에 해당지역 주민도 일정구역에 대한 산림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	○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(2006.8.5)	○ 지역주민이 산림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	산림환경 보호과 ☎ (042) 481-4248

번호	제 목	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규정 및 시행 일	변경사유 및 기대 효과	소관부서
13	국유림 연접 사유림 등의 경영을 국가 가 대행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연접된 타부처 국유림 및 공·사유림 소유자가 경영대행을 희망할 경우 국가가 경영을 대행하고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(2006.8.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 소유자의 편의 도모 및 산림경영의 효율성 증대 	국유림경영과  (042) 481-4091
14	「국민의 숲」 지정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청 지침으로 '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73개소 지정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들이 국유림의 보호·육성에 직접 참여하고 산림 교육 및 여가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국유림 중에 「국민의 숲」을 조성·운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(2006.8.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림 숲가꾸기 등 국유림 경영에 국민 참여 확대 	산림휴양 정책과  (042) 481-4215
15	공동산림 사업체 도입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 등이 국유림을 이용하여 산림소득 개발사업, 수목원, 자연휴양림 등 공익성이 큰 산림사업을 할 경우 산림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(2006.8.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익성이 큰 산림사업에 관계중앙행정기관·지자체 등의 참여와 투자 촉진 	국유림경영과  (042) 481-4095

번호	제 목	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규정 및 시행 일	변경사유 및 기대 효과	소관부서
16	국유림 이용 확대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경우 국유림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(2006.8.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균형발전 도모 	국유림경영과 ☎ (042) 481-4091
17	국유림 대부 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림을 대부(사용 허가)할 경우 산지 전용 허가(신고) 절차를 따로 이행 ○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와 불요존 국유림에 대한 대부 범위를 공용·공공용 등으로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림을 대부(사용허가)하게 되면 산지전용 허가(신고)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. ○ 집단화된 요존국유림은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산나물류, 약초류 및 버섯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 ○ 소규모로 분산된 불요존 국유림에 대한 용도제한을 폐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(2006.8.5) 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 도모 ○ 국유림의 적절한 활용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	국유림경영과 ☎ (042) 481-4098 〃
18	산림문화· 휴양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숲해설가, 등산안내인, 산림 문화·휴양교육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개설·운영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 실시 - 산림청장이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 (2006.8.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문화·휴양교육을 내실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 	산림휴양 정책과 ☎ (042) 481-4215

번호	제 목	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규정 및 시행 일	변경사유 및 기대 효과	소관부서
19	자연휴양시설 타당성 평가 실시	<신 설>	○ 자연휴양림안에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 전문가 등으로부터 휴양시설의 규모·위치 등에 관하여 적합성 및 경관 등에 대한 평가 실시	○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제15조 (2006.8.5)	○ 자연휴양림 지정목적에 적합하고 친환경적인 휴양시설을 설치	산림휴양 정책과 ☎ (042) 481-4211
20	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휴식년제 도입	<신 설>	○ 자연휴양림·등산로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	○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, 제25조 (2006.8.5)	○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	산림휴양 정책과 ☎ (042) 481-4211
21	조난구조 등을 위한 산림 항공구조대 편성 운영	<신 설>	○ 산림항공관리소에 산림항공 구조대를 편성하여 산악지역에서 등산인의 조난·실종·추락 등의 사고 발생시 구조·구급 활동 실시	○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 (2006.8.5)	○ 등산인구 5천만 명 시대를 맞아 등산객의 안전관리를 강화	산림재해 상황팀 ☎ (042) 481-4238
22	자연휴양림 지정요건 완화	○ 국가·지자체 - 50ha이상 산림 ○ 개인 - 30ha이상 산림	○ 국가·지자체 - 30ha이상 산림 ○ 개인 - 20ha이상 산림	○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(2006.8.5)	○ 산림휴양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휴양 서비스 향상	산림휴양 정책과 ☎ (042) 481-4211



<http://www.forest.go.kr>